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기통신설비 설치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허가기간 확대 〉
■ 이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69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 성 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전기통신설비 설치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 확대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정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6. 24.
3.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점용·사용의 목적에 따라 허가 기간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음.

한편, 통신 해저케이블은 국가 간의 인터넷 데이터 등 통신 신호를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신설비로서 최근 한국에 설치된 8개 케이블 중 2개 케이블의 내용(耐用) 연수가 경과하여 신규 케이블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통신 해저케이블은 통상 설치 후 25년 이상 장기간 운용이 필요한 통신설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잦은 허가 기간 연장 절차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불허가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전력 해저케이블과 같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

기사업자가 전원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 그 허가 기간을 3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신 해저케이블과 전력 해저케이블이 모두 해저에 매설되는 설비일 뿐만 아니라 공익성이 큰 기간사업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30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나목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전기통신설비 설치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 확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를 해저에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을 30년 이내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나목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점용·사용허가의 기간 등)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점용·사용허가의 기간 등)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 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사용: 5년. 다만,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3. ----- -----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신설>	나.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

현행	개정안
나. (생략)	용·사용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 30년 다. (현행 나목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의 적용례) 제11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청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통신 해저케이블은 국가 및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하여 연결을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가상서버·빅데이터·사물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음.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글로벌 광역통신망(WAN) 사용량이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통신 해저케이블의 중요성도 더욱 증가하는 상황임.¹⁾

1) 민영훈 외 4인, 「보이지 않는 생명선, 해저케이블 안보 동향과 대응 방향」, 『KMI동향보고』 VOL.219, 2026년 3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해저케이블은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이 통상 5년으로 한정되어 잦은 허가 기간 연장 절차에 따른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연장 불허가에 대한 우려로 민간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상 통신 해저케이블은 제11조제1호의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²⁾에 해당하여 30년 이내의 기간으로 점용·사용 허가가 가능함에도, 해양수산부장관·지방자치단체 등 공유수면관리청이 주기적 관리 필요성을 이유로 대부분 5년으로 허가하고 있기 때문임.

□ 이에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즉 통신 해저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한 허가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30년 이내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초고속·대용량 글로벌 데이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 환경을 조성하고, 25년 이상 장기간 운영되는 해저케이블의 특성³⁾에 맞게 허가 기간을 현실화함으로써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점용·사용허가의 기간 등)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30년

3) 박영규·김영호·나한나(2016), 『SMART 케이블을 이용한 해양 관측』,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제해양과학기술동향집.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에 따라 통신 해저케이블에 대한 허가 기간이 “30년 이내”로 명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가 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유수면관리청이 기존과 같이 주기적 관리의 필요성을 이유로 재량권을 행사하여 다시 5년 단위로 허가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⁴⁾

둘째, 개정안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통신 해저케이블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하게 될 경우, 해양수산부는 해저에 매설되어 장기간 운용되는 전력 해저케이블(「전기사업법」상 송전선로⁵⁾)도 통신 해저케이블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30년 이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⁶⁾

현행법상 전력 해저케이블은 통신 해저케이블과 같이 제11조제1호⁷⁾

4)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과 더불어 시행령 및 업무처리지침 등을 통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장기 허가를 부여하도록 세부기준을 정비하는 보완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5)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분산형전원”이란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제안이유에서는 전력 해저케이블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이 현행법 제11조제3호가목에 따라 30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인·배수(引·排水)를 위한 점용·사용을 위해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ex. 수산·양식업 및 해수 인입을 위한 공유수면 사용 등)로서 일반적인 전력 해저케이블과는 차이가 있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개정안과 같이 통신 해저케이블에 대해 별도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규정한다면 전력 해저케이블도 이와 같이 예외를 인정하자는 의견임.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점용·사용허가의 기간 등)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대

가 적용되어 30년 이내의 허가가 가능하나, 공유수면관리청이 통상 5년 단위로 허가하고 있는 상황임.

전력 해저케이블에 대해서도 허가기간을 별도로 30년 이내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전력 해저케이블의 특성 및 안정적 운영의 필요성⁸⁾과 함께 현행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따른 해양환경 및 안전에 대한 주기적 관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현행법 제11조제3호 각 목은 전기사업자(가목)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나목)가 제8조제1항제5호⁹⁾에 따른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인·배수, 引·排水)”를 하려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장기의 점용·사용허가 기간(각각 30년, 15년)을 인정하는 조항임.

개정안은 같은 호에 나목을 신설하여 “인·배수를 위한 점용·사용이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30년

8) 최근 해상풍력 발전의 확대로 해상 및 도서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육상으로 송전하기 위한 해저 송전선로 건설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해당 설비 역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수십년간 운용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통신 해저케이블과 같이 장기 허가를 통한 안정적 운용 담보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민영훈 외 4인, 「보이지 않는 생명선, 해저케이블 안보 동향과 대응 방향」, 『KMI동향보고』 VOL.219, 2026년 3월.).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인데, 해저 통신케이블은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인·배수 관로가 아닌 전기통신을 위한 설비¹⁰⁾에 해당함.

즉, 현행 개정안의 문언대로 규정할 경우 법령 해석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로 제한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인·배수 관련 예외를 규정한 제11조제3호가 아닌 다른 호로 조문을 이동시켜 법적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기간(법 제11조) >

조문	주요내용	기간
법 제11조제1호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30년 이내
법 제11조제2호	제1호 외의 인공구조물	15년 이내
법 제11조제3호 본문	제 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3 호 및 제 5 호 부터 제 11 호 까 지 의 규 정 에 따 른 - 공유수면에 점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제2호) -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제3호) - <u>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제5호)</u> -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제6호) -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배어내는 행위(제7호) -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	5년 이내

10)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조문	주요내용		기간
	점 용 · 사용	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제8호) -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제9호) -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제10호)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제11호)	
법 제11조제3호가목	<u>제8조제1항제5호</u> 에 따른 점용·사용이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		30년 이내
안 제11조제3호 나목 <개정안 신설>	<u>제8조제1항제5호</u> 에 따른 점용·사용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		30년 이내
법 제11조제3호 나목	<u>제8조제1항제5호</u> 에 따른 점용·사용이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육상해수양식업업을 영위하거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종자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15년 이내

넷째, 개정안 부칙 제2조는 개정 규정을 ‘법 시행 전에 신청한 허가’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¹⁾. 이는 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처분시법 원칙¹²⁾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시행 전에 신청한”이란 표현은 법 시행 시점 이전에 이미 허

11) 안 제2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의 적용례) 제11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청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2) 「행정기본법」

제14조(법령등 개정에 따른 적용 기준) ①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 때의 법령등이 아닌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한다. 다만,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이 완료된 종전 허가 건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오해나 혼선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

행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 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 적용례의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해저 통신케이블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개정안의 인용 조항(제8조제1항제5호)으로 인한 오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제11조제2호를 신설하여 조문 위치를 조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설비뿐만 아니라 「전기사업법」상 송전선로의 허가 기간도 30년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해저 통신케이블과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는 해저 송전선로 사업과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¹³⁾

13)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문 의 처
02)6788-5422